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2017	김원이의원	2025.08.0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위원회(2025.11.1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2087	박성민의원	2025.08.11.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 11. 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

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인식 제고 교육,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적용”을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으로,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적용”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전환을”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로, “전환에”를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로 한다.

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예지보전,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3의4.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3의5.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생산, 운영, 공급 등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한다.

5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방법”을 “방법, 제3항에 따른 진단 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환과”를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전환에”를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전환에”를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을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산업데이터의 표준화)”를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데이터”를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데이터”를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생성ㆍ활용”을 “생성ㆍ활용, 산업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데이터”를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으로 한다.

3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확보 및 처리 지원

제14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거래

7.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제4장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협업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를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6.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제22조제1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을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지원)”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환을”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로,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

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30조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 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선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본다.

제5조(협업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신 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관리, 예지보전,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의4.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5.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생산, 운영, 공급 등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적용하거나 「인공

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
5.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	② ----------

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신 설>	5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7. 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8.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	8. ----------전환 및 인공지

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능 활용----------
9.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10.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② (생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법, 제3항에 따른 진단 기준 및 방법----------.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전환위원회를 대	④ ----------위원회----------

표하며,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위원회----------위원회----------.
⑧ 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①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6.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7.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	7. ----------전환 및 인공지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능 활용----------
8.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 전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 ----------.
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제3장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장비·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3.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①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4. 산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4.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5.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생성·활용,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확보 및 처리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거래
<신 설>	7.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② (생 략)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	③ ----------

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1.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3.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1.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2.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④ 전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회----------. ⑤ ----------위원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제19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①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센터 ----------.
③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	④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형 및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3.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	4. ----------전환 및 인공지

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능 활용----------
<신 설>	5.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신 설>	6.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신 설>	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②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제23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협력 등)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1.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1.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2.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3.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3.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및 인공지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신 설>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협회의 설립)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7조(협회의 설립) ①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환위원회의 위원 중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